

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시행 : 2022. 06. 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해당 연도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,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,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계획, 등록금 의존율, 타대학 등록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) ① 위원회는 각 구성단위의 추천을 받아 교원·직원·학생을 대표하는 자 및 대학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로 다음과 같이 총장이 위촉한다.

1. 교원: 2명
 2. 직원: 2명
 3. 재학생: 4명(대학원생 2명, 학부생 2명)
 4. 대학 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: 2명
- ② 교원 및 직원 위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 및 대학 등록금회계에 충분한 시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.
- ③ 학생 위원은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- ④ 대학 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는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사로 한다.
- ⑤ 위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1. 교원 대표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교수의회의 의견을 들어 교무처장이 추천한다.
 2. 직원 대표 위원은 본교 직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인사처장이 추천한다.
 3. 학생 대표 위원은 학부총학생회 및 대학원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미래혁신원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 한다.
 4. 대학 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 중 1인은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며, 1인은 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미래혁신 원장이 추천한다.

제4조(위원 자격 상실 등) ① 교수 및 직원 위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 2. 직위해제
 3. 징계처분(감봉 이상)
 4.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- ② 학생 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1. 휴학 및 졸업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아닌 경우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등록금심의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, 총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겹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대학의 소속직원이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
2. 회의록 작성과 보관
3. 기타 위원회의 사무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

2. 회의 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송부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10조(등록금 관련 자료 요구) 위원회는 등록금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밀누설금지 등)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예산)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주관부서) 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「처무규정」 상 대학 예산편성 및 등록금 책정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

제14조(시행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며, 위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